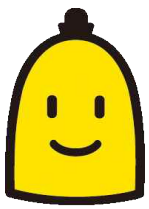
2017회계연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2018년 5월 4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종로구의회로부터 종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8년 4월 5일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7회계연도 종로구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종로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이 서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종로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박 노 섭 (인)

검사위원 최 송 희 (인)

검사위원 이 혜 선 (인)

목 차

Ⅰ. 결산의 확인

1. 결산총평 ---------- 1p
2. 일반회계 ---------- 2p
3. 특별회계 ---------- 3p
4. 재무제표 ---------- 5p
5. 성과보고서 ---------- 7p
6.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8p
7. 예비비 결산 ---------- 8p
8. 기금결산 ---------- 9p
9. 채권결산 ---------- 11p
10.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 12p

Ⅱ. 결산검사결과

○ 권고 및 개선요구 사항 ---------- 13p
○ 기타사항 ---------- 23p

Ⅰ 결 산 총 평

1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잉여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입(A)		359,061	383,650	413,230	446,086	495,877
세출(B)		276,796	291,285	309,607	337,968	369,128
잉여금 (A-B)	소 계	82,265	92,365	103,623	108,118	126,749
	이 월 금	16,953	21,045	30,033	39,814	50,521
	보조금 집행잔액	14,254	3,391	3,544	5,324	3,091
	순세계 잉여금	51,058	67,929	70,046	62,980	73,137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잉여금 (C=A-B)
합 계	478,501,804	495,876,497	369,127,765	126,748,732
일 반 회 계	418,244,558	435,470,894	357,628,960	77,841,934
특 별 회 계	60,257,246	60,405,603	11,498,805	48,906,798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이 월 액			
		명시	사고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126,748,732	19,673,823	30,847,081	3,090,431	73,137,397
일 반 회 계	77,841,934	12,867,823	24,004,200	3,069,105	37,900,806
특 별 회 계	48,906,798	6,806,000	6,842,881	21,326	35,236,591

II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개요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7	418,244,558	474,317,580	435,470,894	38,846,686	2,751,214	36,095,472
2016	381,558,436	424,971,030	388,208,761	36,762,269	1,628,145	35,134,124

구 분	합 계	지 방 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 조 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감액	47,262,133	4,185,089	15,317,221	3,412,454	2,601,238	19,871,421	1,874,710
2017	435,470,894	102,223,659	71,211,289	10,459,566	63,433,149	122,325,092	65,818,139
2016	388,208,761	98,038,570	55,894,068	7,047,112	60,831,911	102,453,671	63,943,429

○ 2017년도 실제 수납액은 435,470,894천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418,244,558천원 대비 104.11%, 17,226,336천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율은 91.80%로 전년 대비 0.46% 증가하였음.

○ 미수납액 38,846,686천원은 징수결정액의 8.19%이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08%인 2,751,214천원으로, 이는 주로 평가액 부족, 시효소멸, 납부 의무자의 무재산 등에 기인한 것이며,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92.92%인 36,095,472천원임.

- 이월된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무재산이 13.55%인 4,890,903천원, 행방불명이 2.60%인 937,681천원, 납세태만은 62.76%인 22,653,460천원, 폐업 또는 부도가 10.93%인 3,946,812천원, 소송계류·국외이주 등 기타가 10.16%인 3,666,616천원임.

※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일치하였음을 확인함.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결과

(단위: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435,470,894	435,470,894	0

2 세 출 결 산 개 요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일반회계 총계	418,244,558	357,628,960	37,177,023 (305,000)	13,172,823 (305,000)	24,004,200	23,438,575
일반공공행정	54,359,246	49,271,863	563,581	374,967	188,614	4,523,802
공공질서및안전	1,152,956	1,107,149	0	0	0	45,807
교 육	5,158,257	4,895,498	0	0	0	262,759
문화및관광	35,838,778	25,089,900	8,479,252	3,464,200	5,015,052	2,269,626
환 경 보 호	29,670,423	28,417,297	500,000	500,000	0	753,126
사 회 복 지	130,374,128	115,723,945	10,914,793 (305,000)	8,048,656 (305,000)	2,866,137	3,735,390
보 건	8,051,123	7,472,176	0	0	0	578,947
농림해양수산	1,058,600	435,494	570,726	0	570,726	52,380
산업·중소기업	2,032,481	1,693,501	257,501	135,000	122,501	81,479
수송및교통	17,701,167	11,142,070	5,563,755	0	5,563,755	995,342
국토및지역개발	19,923,138	8,503,283	10,327,415	650,000	9,677,415	1,092,440
예 비 비	1,380,666	0	0	0	0	1,380,666
기 타	111,543,595	103,876,784	0	0	0	7,666,811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 )는 자금없는 이월액임.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85.50%에 해당되는 357,628,960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88%에 해당되는 37,177,023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47건, 13,172,823천원이고, 사고이월은 78건, 24,004,200천원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60%에 해당하는 23,438,575천원임.

III 특 별 회 계

1 세 입 결 산 개 요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 수 납 액	미 수 납 액 처 리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월액
특 별 회 계	60,257,246	81,733,208	60,405,603	21,327,605	1,767,124	19,560,481
의료급여	381,426	595,509	391,707	203,802	0	203,802
주 차 장	59,875,820	81,137,699	60,013,896	21,123,803	1,767,124	19,356,679

구 분	합 계	지 방 세	세 외 수 입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 조 금	보전수입 및 내 부 거 래
증 감 액	2,527,939	0	△1,236,042	0	0	2,123,692	1,640,289
2 0 1 7	60,405,603	0	13,190,310	0	0	4,535,564	42,679,729
2 0 1 6	57,877,664	0	14,426,352	0	0	2,411,872	41,039,440

○ 종로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2017년 실제 수납액은 60,405,603천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391,707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60,013,89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24%, 148,357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2 세 출 결 산 개 요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타특별회계	60,257,246	11,498,805	13,648,881	6,806,000	6,842,881	35,109,560
의료급여	381,426	360,099	0	0	0	21,327
사회복지	381,426	360,099	0	0	0	21,327
주차장	59,875,820	11,138,706	13,648,881	6,806,000	6,842,881	35,088,233
수송및교통	56,438,883	8,151,982	13,648,881	6,806,000	6,842,881	34,638,020
기타	3,436,937	2,986,724	0	0	0	450,213

○ 2017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19.08%에 해당하는 11,498,80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65%에 해당하는 13,648,881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1건, 6,806,000천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 6,842,881천원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8.26%에 해당하는 35,109,560천원임.

주차장 특별회계의 이월 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1건, 숭인 제4공영주차장 확충 건설 등 3건으로 설계용역 공정 및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연내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음.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고,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결과

(단위:천원)

수납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60,405,603	60,405,603	0

Ⅳ 재 무 제 표

1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7년	3,186,309	21,021	3,165,288	388,966	341,821	△47,145
2016년	3,131,057	20,999	3,110,058	337,022	315,502	△21,520
증감	55,252	22	55,230	51,944	26,319	△25,625

○ 2017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55,23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상태는 1,78%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총비용-총수익)은 전년대비 25,625백만원 감소하였음.

2 재무제표 요약

【요약재정상태표】

(단위:백만원,%)

구 분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 동 자 산	299,854	9.41	262,040	8.37
투 자 자 산	8,553	0.27	8,972	0.29
일 반 유 형 자 산	237,902	7.47	234,711	7.50
주 민 편 의 시 설	520,750	16.34	511,738	16.34
사 회 기 반 시 설	2,116,881	66.44	2,111,153	67.42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369	0.07	2,443	0.08
자 산 총 계	**3,186,309**	**100.00**	**3,131,057**	**100.00**
유 동 부 채	4,571	21.74	5,710	27.19
기 타 비 유 동 부 채	16,450	78.26	15,289	72.81
부 채 총 계	**21,021**	**100.00**	**20,999**	**100.00**
고 정 순 자 산	2,875,635	90.85	2,857,759	91.89
특 정 순 자 산	120,669	3.81	101,278	3.26
일 반 순 자 산	168,984	5.34	151,021	4.85
순 자 산 총 계	**3,165,288**	**100.00**	**3,110,058**	**100.00**
부채및순자산총계	**3,186,309**	**-**	**3,131,057**	**-**

○ 자산은 지난해에 비해 55,25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유동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51,349백만원 증가)에 의한 것임. 비유동자산의 총액은 2,886,455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43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5,728백만원 증가)에 의한 것임.

○ 부채는 지난해에 비해 2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퇴직급여충당부채(852백만원 증가)에 의한 것임, 유동부채의 총액은 4,571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39백만원이 감소함. 비유동성 부채의 총액은 16,450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6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임.

【요약재정운영표】- 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Ⅰ. 사업순원가	231,235	147,960	83,275	0	83,275	197,858	122,808	75,050	-	75,050
Ⅱ. 관리운영비	0	0	114,138	△19,277	94,861	-	-	113,859	△9,656	104,203
Ⅲ. 비배분비용	0	0	15,725	0	15,725	-	-	13,441	-	13,441
Ⅳ. 비배분수익	0	0	22,665	0	22,665	-	-	16,456	-	16,456
Ⅴ. 재정운영 순원가	0	0	190,473	△19,277	171,196	-	-	185,894	△9,656	176,238
Ⅵ. 일반수익	0	0	237,618	△19,277	218,341	-	-	207,414	△9,656	197,758
Ⅶ. 재정운영결과 (Ⅴ - Ⅵ)	0	0	△47,145	0	△47,145	-	-	△21,520	-	△21,520

○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7회계연도 종로구의 사업순원가는 83,275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94,861백만원), 비배분비용(15,725백만원) 및 비배분수익(22,665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71,196백만원임.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18,341백만원을 차감한 2017회계연도 (종로구)의 재정운영결과는 △47,145백만원임.

【요약재정운영표】- 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인건비	114,360	33.46	105,523	33.44
운영비	89,648	26.23	81,514	25.84
정부간이전비용	6,151	1.80	5,953	1.89
민간등이전비용	113,050	33.07	105,986	33.59
기타비용	18,612	5.44	16,526	5.24
비용총계	**341,821**	**100.00**	**315,502**	**100.00**
자체조달수익	191,140	49.14	168,402	49.97
정부간이전수익	197,805	50.85	168,279	49.93
기타수익	21	0.01	341	0.10
수익총계	**388,966**	**100.00**	**337,022**	**100.00**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47,145**	**-**	**△21,520**	**-**

○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114,360백만원(33,46%), 운영비 89,648백만원(26.23%), 정부간이전비용 6,151백만원(1.80%), 민간 등 이전비용 113,050백만원(33.07%), 기타비용 18,612백만원(5.44%)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수익은 388,966백만원이며 이 중 자체조달수익이 191,140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2,73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임시세외수익에 의한 것임.

중앙정부 및 시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197,805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9,52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국·시비보조금수익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임.

재정운영 결과(비용-수익)은 Δ47,145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5,625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국·시비보조금수익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임.

Ⅴ 성과보고서

(단위:개, 천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9	56	149	18	117	14	369,127,765	337,967,901	31,159,864
감사담당관	1	1	8	0	8	0	197,910	198,043	△133
행정지원국	1	8	27	5	20	2	105,836,099	95,850,753	9,985,346
문화관광국	1	9	22	1	21	0	35,686,647	35,767,365	△80,718
복지환경국	1	16	30	3	25	2	151,462,627	138,540,263	12,922,364
도시관리국	1	7	22	3	14	5	9,262,775	9,605,635	△342,860
안전건설교통국	1	6	22	3	18	1	29,784,335	32,509,181	△2,724,846
신청사건립추진단	1	1	2	0	0	2	18,038,660	8,154,600	9,884,060
보건소	1	7	14	3	9	2	15,527,195	14,111,972	1,415,223
의회사무국	1	1	2	0	2	0	3,331,517	3,230,089	101,428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함.

종로구는 '전략목표(9개)-정책사업목표(56개)-단위사업(14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4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49개 성과지표 중 135개(90.6%)가 성과달성 및 초과달성 하였으며, 14개(9.4%)는 미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임.

Ⅵ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단위:건,천원)

구 분	전 용 내 역		
	건 수	감 액	증 액
합 계	**30**	**1,155,575**	**1,155,575**
일반회계	30	1,155,575	1,155,575
특별회계	0	0	0
의료급여	0	0	0
주 차 장	0	0	0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 30건, 1,155,575천원이 전용되었음.

Ⅶ 예 비 비 결 산

(단위:천원)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647,837**	**635,985**	**635,985**	**0**	**11,852**
일반회계	647,837	635,985	635,985	0	11,852
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	0	0	0	0	0
주 차 장	0	0	0	0	0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지출결정액 647,837천원 중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정리사업 외 7건, 총 635,985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852천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없음.

Ⅷ 기 금 결 산

1 기 금 운 용 내 역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합 계	97,037	19,739	23,071	3,332	116,776
신청사건립기금	84,203	19,295	19,541	246	103,498
중소기업육성기금	1,098	547	1,077	530	1,645
노인복지기금	646	12	12	0	658
자활기금	383	15	15	0	398
양성평등기금	419	8	8	0	427
문화지구육성기금	99	2	2	0	101
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	356	76	116	40	432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33	89	98	9	422
도로굴착복구기금	2,034	△1	799	800	2,033
재난관리기금	4,458	△255	920	1,175	4,203
식품진흥기금	1,360	△189	138	327	1,171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648	140	345	205	1,788

2 기금수입·지출

(단위: 천원)

구 분	수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120,107,465	18,897,682	20,000	1,240,132	97,036,921	1,671,472	1,241,258
신청사건립기금	103,744,067	18,000,000	0	0	84,203,384	1,540,683	0
중소기업육성기금	2,174,984	0	0	1,074,791	1,097,945	2,248	0
노인복지기금	657,767	0	0	0	645,852	11,915	0
자활기금	398,786	0	0	0	383,329	15,457	0
양성평등기금	427,263	0	0	0	419,440	7,823	0
문화지구육성기금	100,832	0	0	0	98,976	1,856	0
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	471,525	0	0	109,190	355,486	6,849	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30,889	0	0	0	332,687	7,891	90,311
도로굴착복구기금	2,833,484	0	0	0	2,034,331	14,805	784,348
재난관리기금	5,378,033	897,682	0	0	4,458,192	22,159	0
식품진흥기금	1,496,956	0	20,000	56,151	1,359,441	11,655	49,709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992,879	0	0	0	1,647,858	28,131	316,890

구 분	지출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120,107,465	2,552,939	669,892	109,137	116,775,497	0
신청사건립기금	103,744,067	246,175	0	0	103,497,892	0
중소기업육성기금	2,174,984	0	530,000	0	1,644,984	0
노인복지기금	657,767	0	0	0	657,767	0
자활기금	398,786	0	0	0	398,786	0
양성평등기금	427,263	0	0	0	427,263	0
문화지구육성기금	100,832	0	0	0	100,832	0
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	471,525	0	39,892	0	431,633	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30,889	8,901	0	0	421,988	0
도로굴착복구기금	2,833,484	735,699	0	64,378	2,033,407	0
재난관리기금	5,378,033	1,175,233	0	0	4,202,800	0
식품진흥기금	1,496,956	206,902	100,000	19,486	1,170,568	0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992,879	180,029	0	25,273	1,787,577	0

○ 2017년도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2종이며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기금 총수입은 23,070,544천원으로 전입금 18,897,682천원, 보조금 20,000천원, 융자금 회수 1,240,132천원, 이자수입 1,671,472천원, 기타수입 1,241,258천원임.

기금의 총 지출은 3,331,968천원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비융자성사업비 2,552,939천원, 융자성사업비 669,892천원, 인력운영비 109,137천원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잔액 19,738,576천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97,036,921천원을 합한 116,775,497천원을 다음연도로 예치하였음.

IX 채 권 결 산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현재액
		증감	발생액	소멸액	
계	9,628,493	△516,757	1,932,513	2,449,270	9,111,736
일반회계	5,956,528	14,860	60,429	45,569	5,971,388
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3,671,965	△531,617	1,872,084	2,403,701	3,140,348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기 금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합 계		9,084,466	27,269	5,944,774	26,614	3,169,692	655
보증금채권	소 계	459,184	0	459,184	0	0	0
	전화선예치금	9,680	0	9,680	0	0	0
	회 원 권	449,504	0	449,504	0	0	0
융자금채권	소 계	8,530,625	27,269	5,390,933	26,614	3,139,692	655
	공무원학자대여금	5,385,983	0	5,385,983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2,619,508	0	0	0	2,619,508	0
	민간학자대여금	304,354	0	0	0	304,354	0
	기 타	220,780	27,269	4,950	26,614	215,830	655
미수금채권	소 계	9,839	0	9,839	0	0	0
	재 산 매 각	9,839	0	9,839	0	0	0
기타채권	소 계	84,818	0	84,818	0	0	0
	기 타	84,818	0	84,818	0	0	0

X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1 공 유 재 산 현 황

(단위:개,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계	10,786	2,662,244,139	106	98,843,276	369	62,501,663	10,523	2,698,585,752
행정재산	10,135	2,627,493,316	95	98,634,814	316	61,356,336	9,914	2,664,771,794
일반재산	651	34,750,823	11	208,462	53	1,145,327	609	33,813,958

○ 2017회계연도 공유재산 결산 결과,

- 전년도말 현재액 2,662,244,139천원 대비 36,341,613천원이 증가한 2,698,585,752천원임.

2 물 품 현 황

(단위:개,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보유액
			계	취득	처분	
계	수량	976	43	85	42	1,019
	금액	10,228,412	948,175	1,400,327	452,152	11,176,587

○ 2017회계연도 정수물품 결산 결과,

- 전년도말 현재액은 10,228,412천원으로 당해연도 증감현황은 취득 85건(1,400,327천원), 처분 42건(452,152천원)으로 총 43건(948,175천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보유현황은 1,019개 11,176,587천원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검토의견

권고 및 개선요구 사항

기획예산과

1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관련한 예산편성시 전년도 집행실적 징구 권고

▢ 현 황

○ 서울시와 매칭사업인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아동급식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단위:천원)

담당부서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집행잔액	잔액비율	비 고
복지지원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170,000	23,393	14%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과	저소득층자활지원/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등	75,304	28,195	37%	기타보상금 +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자활지원/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112,247	59,992	53%	사회보장적수혜금(내일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여성가족과	아동급식지원	756,450	152,602	20%	사회보장적수혜금

- 특히, 위의 사업의 경우 대상선정 단계가 중요하고 선정된 대상대로 정액 지출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단계에서 전년도 집행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권고사항

○ 기획예산과는 본예산 편성시 특히 위 3개 부서의 사회보장적수혜금 등과 관련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것을 권고함.

2 행정운영경비 절감 방안 모색

▢ 현 황

○ 세입증대만큼 세출절감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종로구는 위탁관리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해 출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독려하고 감독하는 차원에서 운영경비에 대해 10% 내외의 예산 절감을 권고하고 있음.

○ 위탁관리기관이나 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구 자체적으로도 인건비성 운영비를 제외한 행정운영경비의 효율적인 지출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을 독려하는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권고사항

○ 각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절감을 독려하는 방안으로, 부서인원수 대비 부서 간 경비지출액을 비교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거나 과거 평균 경비 지출액을 비교하여 당해연도에 경비를 절감한 부서에 포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이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재무과

1 출납정리기간의 출납 최소화

▢ 현 황

○ 「지방회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출납폐쇄 이후 출납정리일(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사항을 두어 출납정리를 하고 있음.

- 이 기간 동안의 주요 출납사항은 1)회계기간 말에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 처리 완료가 곤란한 지출 2)일상경비 교부금 반납 3)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정산·반납 4)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대금 지급 5)세입금의 징수마감 등이 해당됨.

- 출납정리기간에 지출·반납되는 건수가 많다보니 자칫 제반 장부마감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법적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결산 진행에도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됨.

○ 4), 5)의 경우에는 미지급 세출 또는 미수세입으로 마감할 수 없기 때문에 출납폐쇄 이후 출납정리기간에 지출 또는 징수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으나, 1), 2), 3)의 경우는 각 부서에 조기 마감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면 지출·반납 건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권고사항

○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 적극 독려하여 출납정리기간 동안의 출납을 최소화하기를 권고함.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여성가족과

1 집행잔액 과다

▢ 현 황

1) 예산규모 및 사업내용의 중요성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의 2017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과 실제 수입액 및 지출액 그리고 종로구청 33개 부서의 총 합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와 같음.

(단위: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수입액		지출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복지지원과	32,466	8%	46,137	11%	32,550	7%	44,990	13%
사회복지과	25,111	6%	32,150	8%	25,116	6%	28,304	8%
여성가족과	35,202	8%	49,148	12%	36,704	8%	39,752	11%
3개부서 합계	92,779	22%	127,435	31%	94,370	21%	113,046	32%
종로구청 합계	418,244	100%	418,244	100%	435,471	100%	357,628	100%

- 위 3개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비중이 종로구청 세입·세출예산 총액 대비 각각 22%, 3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 기초수급자·저소득층의 생계보장, 보육 및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 복지사업의 중요성은 매우 높음.

2) 집행잔액 및 이월액 규모

○위 3개부서의 세출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5% 미만으로 높은 편은 아니나 해당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내용 및 규모의 중요성을 볼 때, 집행잔액 규모는 크다고 볼 수 있음.

(단위: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	집행잔액		이월액		
		금액	예산대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복지지원과	46,137	847	1.8%	-	300	-
사회복지과	32,150	504	1.6%	2,868	474	-
여성가족과	49,148	2,203	4.5%	5,110	2,083	-
3개부서 합계	**127,435**	**3,554**	**2.8%**	**7,978**	**2,857**	**-**
종로구청 합계	**418,244**	**23,437**	**5.6%**	**13,172**	**24,005**	**-**

3) 집행잔액 비율이 큰 보조금 사업

○ 위 3개부서의 보조금 집행 사업 중 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담당부서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	
복지지원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149,291	-	22,691	15%	사회복지사업 보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43,700	-	20,683	14%	사무관리비 +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단체 지원	108,491	-	37,330	3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건강한 노후및 사회참여기회 보장	194,899	-	29,687	15%	기간제근로자 보수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170,000	-	23,393	14%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과	저소득층자활지원/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등	75,304	-	28,195	37%	기타보상금 +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자활지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112,247	-	59,992	53%	사회보장적수혜금(내일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 급여	639,241	-	63,671	10%	사회복지사업 보조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52,812	-	66,933	15%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어린이집 운영지원	19,423	-	6,423	3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아동급식지원	756,450	-	152,602	20%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220,000	-	28,387	1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상기 보조금 사업은 1)수요자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 2)사업내용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3)사업담당자가 예산 편성시 산출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 등의 원인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됨.

▢ 권고사항

○ 상기 부서에서는 집행잔액 비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전년도 결산 결과와 수요자들의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집행 잔액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여성가족과의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예산편성 항목과 실제 집행하는 항목이 상이함을 지적하고 일치시킬 것을 권고하였으나 금번 결산검사시 2018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다음연도 예산요구 시에는 실제 집행되는 사업명으로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함.

환 경 과

1 적극적인 환경 관련 교육 실시 권고

▢ 현 황

○ 환경과의 경우, 예산규모가 크지 않아 집행잔액의 금액은 작지만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음.
집행잔액 비율의 원인으로는 구매방법의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사업 시행방법 변경으로 인한 신청자 수 감소(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및 환경·에너지 교육 수요 부족 등으로 파악됨.

(단위: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	집행잔액		이월액		
		금액	예산대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환경과	535	72	13.5%	-	-	-

▢ 권고사항

○ 최근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자원낭비, 환경 파괴 등이 사회이슈가 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를 제안함.

청소행정과

1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업 제안

▢ 현 황

○ 요즘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음. 최근 중국에서는 환경보호와 보건위생 개선을 위한 폐자원 수입 규제 조치를 선언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나이프 등의 제공, 식당의 일회용 앞치마, 일회용 식탁보 등

- 이러한 일회용품의 원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편리함의 혜택은 사업주가, 사용비용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까지 유발하고 있음.

- 환경부는 2019년까지 페트병 포장재 재질 및 구조 개선을 밝혔으며,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행사 및 회의 시 일회용품 사용의 전면 금지, 아리수 음수대 확대를 발표한 바 있음.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의원들은 '재활용 시스템 체질 개선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과대포장 제한 캠페인', '재활용 실태 전수조사'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 권고사항

○ 상기 부서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 감소를 위한 다채로운 홍보활동과 캠페인은 물론,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재활용 보상시스템 등 적극적인 종로구만의 사업을 추진하기를 제안함.

도시개발과

1 사직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산 집행 철저

▢ 현 황

○ 사직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금 신청(2017.9.21.)에 따른 사전검토 용역비와 조합사용비용의 보조금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시비)		미집행액		
	예산액	집행금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계
사무관리비/사전검토용역비	22,000	-	20,240	1,760	22,000
기타보상금/ 조합사용비용 보조금	5,375,000	-	5,375,000	-	5,375,000

- 사직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9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2010년 조합설립이 인가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7년 3월 문화재 가치보존 등의 이유로 정비구역 해제가 고시됨.

- 이에 따라 종로구는 2017년 9월 조합으로부터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금 신청(12,017백만원)을 받고,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일부인 5,375백만원을 2017년 12월에 교부받았음.

- 2017년 12월말, 조합이 신청한 12,017백만원의 비용을 검토하는 용역을 체결하여 용역비 20백만원과 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용비용 보조금 5,375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참고로 조합사용비 신청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단위:백만원)

구 분	사용비용
인건비(급여,상여금,퇴직급여등)	1,256
건축설계비	1,752
금융기관차입금 이자	5,530
기타차입금 이자	1,103
기타	2,376
합계	**12,017**

※위의 보조금은 '조합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 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100% 보조될 예정임.
(역사문화적 가치보존으로 인한 직권해제의 경우에는 100%, 기타의 경우에는 70% 보조)

▢ 권고사항

○ 조합이 신청한 사용비용의 검토용역은 2018년에 수행되며 위 비용들의 적합성 및 적정성 등의 검토가 제대로 검토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세무1 · 2과

1 평가액 부족과 관련 결손처분 처리지침 마련 권고

▢ 현 황

○ 2017년도에 결손처분한 총액은 2,751백만원이며 이를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세분해 보면,

- 지방세수입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은 1,645백만원이며 주된 결손처분 사유는 '평가액 부족'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세수입 결손처분의 82.8%인 1,363백만원이 이에 해당함.
-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은 1,106백만원이며 전액 모두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임.

○ 지방세수입에서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처분한 건수는 ㈜바이뉴○○○와 ㈜르메이○○○○ 2건의 부분결손 금액임.

- 위 부분결손은 2002년부터 발생한 재산세 등으로 물건에 대한 압류가 되어 있어 결손사유 중 시효완성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건들로서 체납된 금액이 압류된 물건의 실행환가되어 순차로 배당될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그 초과액을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처분한 것임.
- 최근 5년간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처리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원)

연도	지난년도 체납	결손총액	평가액부족	비고
2013	3,228,365,300	74,457,690	8,804,120	
2014	5.071,767,800	244,688,520	51,053,760	
2015	5,278,188,490	1,296,093,330	1,164,185,220	
2016	4,000,319,410	610,464,120	61,362,300	
2017	4,780,724,380	1,602,527,500	1,363,199,250	

▢ 권고사항

<세무2과>

-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처분하는 경우는 대부분 특정 회사나 특정 사유 발생 시에 진행되므로 사전에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특정사유가 발생하는 특정시점에 '평가액 부족'에 의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결손처분 담당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해당 결손처리가 징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손처리에 대한 감독기관과의 견해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

- 평가액 부족에 의한 결손처분 대상을 결정하고 매년 정리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특정 사안별로 '평가액 부족'에 대한 결손처리를 하는 것보다 업무처리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조세채권을 적시에 정리하기 위하여 압류된 체납조세채권 중 10년(또는 15년)이 경과한 체납대상에 대해 '평가액 부족'에 의한 결손처분 검토를 매년 실시하고 부분결손처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정례화하기를 권고함.

<세무1과>

- 전액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하고 있는 세외수입에서도 차량에 압류되어 결손처분 할 수 없는 과태료의 경우에도 차량(10년 이상)에 압류된 과태료 중 차량 환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부분결손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문화과 · 관광체육과

1 민간이전(편성목 307)보조금의 정산방법 개선 권고

▢ 현 황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타 경제주체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으로서, 보조금은 세출통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임.

○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 두가지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1) 보조사업자의 올바른 선정을 통한 사전관리 측면

2) 집행된 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

○ 종로구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선정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로 사업집행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수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또한 집행·정산 및 운용평가 등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보조금의 정산 감사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제3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것임.

보조금을 교부한 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 감사시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부서담당자가 보조금의 당초 집행이 잘못된 것을 정산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 이를 묵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는 외부 감사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보조사업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대표적인 사례로, 종로구 출연기관인 종로문화재단에서는 재단의 회계감사와 별개로 26개사업 901,980천원의 보조금에 대해 각 사업별로 외부 감사인을 통해 정산감사를 수행하고 정산검토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있음.

▢ 권고사항

○ 특히 민간이전(편성목 307)보조금 지원이 많은 위 부서(문화과·관광체육과)에서는 보조금 정산 시 독립된 제3자인 외부감사인이 사업비 정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회계감사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함.

○ 이것이 제도화 된다면, 사업담당은 수시·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보조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감사에만 집중할 수 있어 보조금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이를 시행함에 있어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예산부담과 실익을 고려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금에 한정하는 등의 탄력적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기타사항

1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정착화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해당부서의 답변서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제출됨.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해 권고하였고, 이 부분이 적극 반영되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수행 시 지난해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답변서가 결산자료와 함께 제출되었음.

- 결산검사 후속 사후관리가 정착되어 향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사항과 이후 후속 조치사항이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제출된다면 결산검사의 질적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재무과의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경우,**

- 지난해 결산검사 시 2016년까지의 공유재산가액이 새올행정시스템과 이호조시스템 가액의 차이로 인해 대차대조표와 결산서상의 가액이 불일치함을 지적한 바 있음.
-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행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 담당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었으나,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7년도에는 시스템상 공유재산가액의 차이를 크게 해소하였음.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중 토지의 차이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17년도에는 그 차이가 현격하게 줄었음.

(단위: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대차대조표 금액	2,544,538	2,537,056	2,535,433
결산서상 금액	2,544,594	2,520,846	2,523,858
차 이	56	16,210	11,575

○ **또한, 청소행정과의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수거비 업무의 경우,**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거비」의 세입예산 과목은 '기타수수료'로 편성하고 수납(결산)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로 징수하여 예산과 결산이 불일치함을 지적한 바 있음.
- 금번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를 확인한 결과, 예산과 결산이 일치되도록 수납세목을 '기타수수료'로 변경·조치하여 금년부터는 이러한 불일치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